

## 인력지원

## 인력

##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

이공계 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·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지원

관련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   지원대상 : 중견기업

전문기관 : 한국중견기업연합회

## I. (Track 1) 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

## ■ 지원대상

-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

※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(단,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 제외)

- (지원인력) 이공계 석·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

## ■ 지원내용

-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\* 석·박사 연구인력(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)의 신규채용

\* '18년 학위취득자부터 '23.2월 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('23년 기준)

## ■ 지원규모

-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
- 최대 3년으로,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
- (지원금액)

구분	석사	박사
정부지원액/연	계약 연봉 대비 40% 이내 지원	
최소 기준연봉	3,400만원 이상	3,600만원 이상
최대 지원한도	1,600만원	2,000만원

※ 기준연봉 산정 : (기본월급 + 월정액 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
## II. (Track 2)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

## ■ 지원대상

-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

※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(단,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 제외)

- (지원인력)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 자

※ 기술애로, 기술지도, 공동연구개발 등 성과창출이 높은 이공계 연구교수 포함

※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해당 기업(기관)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.

※ 공공연구기관: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

## ■ 지원내용

- 기업·공공연·대학 등에서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초기중견기업에 공급하여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술경쟁력 제고

## ■ 지원규모

-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
- 최대 3년으로,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
- (지원금액)

구분	기술전문 경력인
정부지원액/연	계약 연봉 대비 40% 이내 지원
최소 기준연봉	별도 기준 없음
최대 지원한도	2,800만원

※ 기준연봉 산정 : (기본월급 + 월정액 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
## ■ 문의처

-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(fomek.or.kr)
-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사업지원실 (☎ 02-3275-2986)

### 인력지원

## 인력

###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

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

관련부처 : 중소벤처기업부    지원대상 : 중소기업

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### 사업개요



분야	구분	내역사업명	지원규모	비고
채용	①	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	350개 과제 내외	기업당 최대 1명
	②	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		기업당 최대 2명
	③	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		
파견	④	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	120개 과제 내외	기업당 최대 1명

## I.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

### ■ 지원대상

- (지원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\*

\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